

	<h2 style="margin: 0;">기획조정위원회 규정</h2>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10. 16.
		최종개정일자	2018. 10. 16.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기획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산학처장으로 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①교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대학의 연구, 교육, 시설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③발전계획에 관한 부서 및 학과 운영계획 심의
- ④대학(부서 및 학과) 예산편성의 방향과 내용 및 결산 심의
- ⑤성과지표, 자체평가, 교육수요자 만족도 결과에 대한 발전계획의 개선 및 조정
- ⑥환류를 통한 발전계획 및 실행계획 변경 및 보완
- ⑦발전계획 추진결과 우수성과 도출 및 성과확산
- ⑧대학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⑨대학의 홍보에 관한 사항
- ⑩총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- ⑧기타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5조(운영체계)** ①기획조정위원회의 제반업무는 기획산학처에서 한다.

②위원회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③특별팀의 팀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기획조정위원회는 상시 운영된다.

⑤ 기획조정위원회는 부여된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한다.

**제6조(회의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7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4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② 간사는 기획조정위원회의 제반업무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.

**제9조(수당)**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세부사항)**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제청하고 총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2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